

분쟁해결의 첩경(捷徑) – 조정(調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사(意思)와 무관하게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다. 10년 가까이 분쟁 당사자들 틈바구니에서 업무를 수행해 본 조사관으로서 어떠한 분쟁이건 그 해결의 첩경은 조정절차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조사관이 속한 중재부(仲裁部)에서 처리했던 조정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 말 한 종합편성채널은 사이버종교의 폐해(弊害)에 대해 짚어 본다는 지방의 한 교회에 대해 방송했다. 그 내용은 목사가 교인을 감금한 후 세뇌교육을 시켜 가족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신도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현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목사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되었고, 이 때문에 신도들이 대거 이탈해 교회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명예도 크게 실추되었다면서 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 원활한 조정을 위해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피신청인 측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신청인과는 아예 대화도 하지 않으려 했다. 신청인인 목사는 해당 방송이 불공정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도 신고를 했으며, 더 나아가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였다.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어 분쟁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다. 중재부는 먼저 사실조사를 해봤다. 조사결과 방송내용이 전혀 문제없다고 보기가 힘들었다. 신청인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프로그램이 제작된 정황이 보였으며, 특정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당일 중재부는 피신청인 프로그램이 공익(公益)을 위해 나름대로 가치 있는 방송으로 대체적으로는 정당했다고 인정하며 피신청인 측의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면서도 중재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조목조목 짚어 주었고 피신청인 측은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긍했다. 피신청인 측은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심리석상에서 신청인에게 사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에게도 해당 방송 내용에 공익성 및 정당성도 일정 부분 인정됨을 강조하고,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분쟁을 완전히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정보도나 금전배상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 바란다는 신청인과, 각 기관에 제기된 민원이 모두 취하(取下)되기를 원한다는 피신청인 측이 서로 접점(接點)을 찾게 되었다. 수개월을 끌며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당사자간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의외로 쉽게 마무리된 것이다.

덕분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더 이상의 행정력(行政力)을 소비하지 않아도 됐다.

이번 사건은 조정절차의 강점(強點)을 아주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다.



안백수 조사팀 차장
서울제6중재부 조사관